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환 경 오 염 피 해 배 상 책 임 및 구 제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에 사업장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과 관련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포함시키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추가(안 제2조)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등 자구 정비(별표 2 및 별표 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의 경우(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의 경우

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상위규정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	---------------------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로서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 시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로서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환경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u>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u> <u>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u> 를 말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u><신 설></u>	<u>1.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의 경우(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u>
<u><신 설></u>	<u>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의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6819